

#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에 관한 연구

홍 관 표\*

## 목차

-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br>법원의 판결 |
| II. 아동에 관한 가장 보편적 국제인권<br>조약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 | V. 맺는 말                   |
| III.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효력 문제                  |                           |
- 

## Ⅰ 국문초록 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국제연맹은 1921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유엔도 아동의 권리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국제인권규범으로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 나갔다. 유엔은 1959년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고, 1989년 10월 20일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발효를 위한 조건은 유엔의 다른 국제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충족되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6개국 이 모두 당사국이 된 가장 보편적인 국제인권조약이 되었다.

---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논문접수일 : 2026. 2. 1., 심사개시일 : 2026. 2. 6., 게재확정일 : 2026. 2. 20.

우리나라는 유엔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지 2주년이 되는 1991년 10월 20일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조약 제1072호로 우리나라에 발효되었다. 정부는 다른 국제인권조약의 경우와 다르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국내법적 효력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에 구속되어,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이러한 국내적 이행 조치에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는 사법적 조치도 포함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법원의 판결에서 실제 법규범으로 원용되는지 여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 이후 국내적으로 다양한 사건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들이 확인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판결들을 우선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으로 구분하고, 그 틀 내에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들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과 긍정적 측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더 적극적으로 원용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한다.

주제어 : 아동, 인권,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조약, 법원 판결, 국내 이행

## I. 들어가는 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은 유엔이 정한 9개 핵심 국제인권조약(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sup>1)</sup> 중 하나로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전제로 일반적인 성격의 국제인권규범을 보완하여 아동을 위한 인권 목록을 제시한 가장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 44/55호로 표결 없이<sup>2)</sup>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sup>3)</sup> 1990년 9월 2일 국제적으로 발

- 1) 유엔은 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③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 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한다), ⑥ 아동권리협약, ⑦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라 한다), ⑧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 ⑨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한다)의 9개 조약을 핵심 국제인권조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hchr.org/en/core-international-human-rights-instruments-and-their-monitoring-bodies>> (last visited January 15, 2026).
- 2) UN General Assembly, Forty-fourth session General Assembly Provisional Verbatim Record of the Sixty-first Meeting (A/22/PV.61), 1989, p. 3.
- 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아동의 권리」, 2005, 3면.

효되었다.<sup>4)</sup>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후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고, 아동권리협약은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조약 제1072호로 우리나라에 발효되었다.<sup>5)</sup>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을 통해 그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면서 발효 중인 다른 모든 조약과 마찬가지로 이에 구속되며,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sup>6)</sup> 구체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적으로 대부분의 권리구제가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당사국의 이러한 이행 조치에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는 사법적 조치도 포함된다. 실제로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sup>7)8)9)</sup>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된 ‘공통핵심문

4)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①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②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the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③ 「통보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채택했으며, 모두 국제적으로 발효된 상태이다.

5)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중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만 2004년 9월 24일 비준했다.

6) “발효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제27조.

7) 기존 국가보고절차에서는 인권조약기구가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회의(상호대화)를 하기 이전에 ① 당사국의 ‘보고서’, ② 인권조약기구가 채택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 ③ 당사국의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가 요구

서'(common core document)<sup>10)</sup>의 작성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권조약의 조문이 법원에서 원용되는지 여부와 법원을 통해 직접 집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인권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와 관련된 항목에서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up>11)12)</sup>

아동권리협약이 법원의 판결에서 실제 법규범으로 원용되는지 여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13년 이후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다수의 판결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국

---

되는데, 약식보고절차는 이를 ① 인권조약기구가 채택한 ‘보고전 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② 당사국의 ‘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로 간소화한다. 당사국의 ‘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당사국의 ‘보고서’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cpr/reporting-procedure>> (last visited January 15, 2026).

- 8) 유엔은 2014년 4월 9일 채택한 결의 68/268호에서 처음 약식보고절차를 인권조약 기구들과 당사국들에 권유했다. UN General Assembly, Strengthening and enhancing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RES/68/268), 2014, paras. 1 and 2.
- 9)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23년 2월 2일 채택한 결정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를 통해 아동권리협약과 그 2개 선택의정서에 대하여 약식보고절차를 표준 보고절차로 정하고, 당사국이 이를 선택적으로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 2023년 9월 30일까지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decisions#no14>> (last visited January 15, 2026).
- 10) 인권조약기구에 대한 당사국의 보고서에서 공통이 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 및 통계, 인권 체계 등을 포함한 문서로, 각 인권조약기구는 당사국에 대한 국가보고 심의 절차에서 공통적으로 이를 참고하게 된다.
- 11) UN, Compilation of guidelines on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RI/GEN/2/Rev.6), 2009, para. 42 (d).
- 12) 그러나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은 2022년 2월 8일에 제출한 공통핵심문서에는 국제인권조약이 법원에 의해 원용되거나 직접 적용된 사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UN, Common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 Republic of Korea (HRI/CORE/KOR/2022), 2022, paras. 50-53.

내 이행에 관한 연구 중 이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3)14)</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아동 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의미와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Ⅱ. 아동에 관한 가장 보편적 국제인권조약으로서의 아동권리협약

### 1. 아동권리협약의 성안

1921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sup>15)</sup> 채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sup>16)</sup> 아동의 권리와 아동에 대한 특

- 
- 13)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국내 사법판단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용, 2017; 이해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2020, 117-121면; 이해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20; 정기상·오서현,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법제」 통권 제697호, 법제처, 2022; 홍관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3-94면; 홍관표,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2015, 169-184면.
- 1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의 아동권리협약 적용 사례로 소개하기도 한다. 김민진·조행난·지영환, 한국법원의 인권규정의 적용과 발전방향 :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168-171면.
- 15) 다만,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선언이 제공하고자 하는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2007, p. 3.
- 16) 이영호·문영희, UN 아동권리협약의 변천과 한국의 이행 성과와 과제, 「비교교육연구」 제26권 제6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3면.

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국제인권규범으로 마련하고자 한 시도는 1959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sup>17)</sup>에 이어, 1989년 아동권리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1979년 ‘세계 아동의 해’<sup>18)</sup>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폴란드 주제네바 유엔 대사의 제안에서 시작된<sup>19)</sup> 아동권리협약 제정 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그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약 11년에 걸쳐 이루어졌고,<sup>20)</sup> 이 과정에 각 국가의 정부대표 뿐만 아니라 유엔의 기구 및 전문기관과 여러 비정부기구들이 함께 참여했다.<sup>21)</sup> 그리고 이러한 논의 및 성안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폴란드 초안은 광범위하게 수정되었고 범위가 확대되었다.<sup>22)</sup>

## 2. 가장 보편적인 국제인권조약

아동권리협약의 성안을 위해 약 11년이 걸렸으나, 그 채택 후 1년

- 
- 17) 유엔 총회는 1959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 관한 결의 1386 (XIV)호를 반대나 기권 없이 찬성 78표로 채택했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bid*, p. 23.
- 18) 유엔 총회는 1976년 12월 21일에 결의 31/169호로 유엔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bid*, p. 29.
- 19) 폴란드는 1978년 2월 7일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제출했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bid*, pp. 32-35.
- 20) 아동권리협약에서 처음으로 한 국제인권조약 내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함께 포함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당시 서방측과 동구권의 관계로 인한 합의 과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양희·김상원, 국제아동인권규범의 이행 -아동권리협약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315면.
- 21)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3면.
- 22)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책, 3면.

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제49조 제1항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아동권리협약이 발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0년 8월 3일에 20번째 비준서가 기탁되어,<sup>23)</sup> 1990년 9월 2일 아동권리협약은 발효되었고, 이는 채택일로부터 9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는 유엔의 다른 국제인권조약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한 것이었다.<sup>24)</sup> 또한 199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아동정상회의(World Summit of Children)과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이 요청되면서,<sup>25)26)</sup> 1995년까지 185개국 이상의 국가가 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6개국이 모두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sup>27)</sup> 이와 같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약

23) 1990년 8월 1일까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19번째 비준서가 기탁되었고, 1990년 8월 3일 3개국(방글라데시, 베냉, 수단)의 비준서가 기탁되었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서명, 가입 및 비준 상황에 관하여는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의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웹페이지 참조.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 (last visited January 15, 2026).

24)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65년 12월 21일 채택되어 1989년 1월 4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고,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된 후 9년이 지난 다음인 1976년 1월 3일에 사회권규약이, 같은 해 3월 23일에 자유권규약이 각각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12월 18일에 채택되어 1981년 9월 2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고,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에 채택되어 1987년 6월 26일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25) UNICEF, *First Call for Children*, 1990, pp.4, 5, 11 and 13.

26)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paras. 21 and 46.

27) 2015년 10월 1일 소말리아가 비준하면서, 미국이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1995년 2월 16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속하며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동권리협약의 국제인권기준으로서의 보편성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 3.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3부, 5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41조)는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제45조)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널리 알릴 의무,<sup>28)</sup> 조약감시기구(treat-monitoring body)인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설립 및 운영,<sup>29)</sup> 당사국의 정기 보고제도(periodic reporting system),<sup>30)</sup> 아동권리위원회의 권한,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의 전문기구, 아동기금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sup>31)</sup> 등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54조)는 서명, 비준 및 가입, 발효, 개정, 유보, 폐기(denunciation), 아동권리협약의 수탁자, 정본의 언어와 같은 최종 조항(final clauses)을 포함하고 있다.<sup>32)</sup>

아동권리협약 제1부 중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에 따른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 제1조와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권리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의무 일반에 관한 제4조, 아동권리협약과 당사국의 법 및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41조를 제외한 나머지 실체적 규정들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체계화하는 것이 가능하겠

28) 아동권리협약 제42조.

29) 아동권리협약 제43조.

30) 아동권리협약 제44조.

31) 아동권리협약 제45조.

32) Sharon Detrick,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pp. 21-22.

으나,<sup>33)</sup>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몇 개의 주제별로 그룹화(clustering)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제44조 제1항 나호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할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에 관한 가장 최근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주제별 그룹 체계<sup>34)</sup>는 다음 표와 같다.

1. 일반 원칙	
(1) 차별금지	제2조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3조
(3) 생명, 생존 및 발전에 대한 권리	제6조
(4)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제12조
2. 시민적 권리 및 자유	
(1) 출생등록, 성명 및 국적	제7조
(2) 신분의 보존	제8조
(3) 표현의 자유, 정보를 추구·접수·전달할 권리	제13조
(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5)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제15조
(6)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제16조
(7) 정보에 대한 접근, 아동의 복지에 해로운 자료로부터의 보호	제17조

33)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로 유형화한 예로,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제6호, 한국가족법학회, 1992, 44-46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유형화한 예로,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 265-167면; 아동의 용이한 이해를 목적으로 12개 항목으로 재정리한 예로, 박향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2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111-117면; 아동 권리협약의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예로, 이영호·문영희, 앞의 글, 5-6면.

3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reat-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3), 2015, paras. 17-41.

<b>3. 아동에 대한 폭력</b>	
(1) 학대 및 방임	제19조
(2) 모든 형태의 유해한 관행	제24조 제3항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제34조
(4)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호, 제28조 제2항
(5) 아동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지	제39조
<b>4.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b>	
(1)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따른 가정 환경과 부모의 지도	제5조
(2)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 지원 및 보육서비스 제공	제18조
(3)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4) 가족 재결합	제10조
(5) 아동양육비의 회수	제27조 제4항
(6) 가정 환경이 박탈된 아동	제20조
(7) 배치에 대한 정기 심사	제25조
(8) 국내 및 국외 입양	제21조
(9)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b>5. 장애, 기본적인 건강 및 복지</b>	
(1) 존엄성, 자립 및 적극적 사회참여	제23조
(2) 생존 및 발전	제6조 제2항
(3) 건강 및 의료서비스	제24조
(4) 약물 남용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제33조
(5) 사회보장 및 아동보육 서비스와 시설	제26조, 제18조 제3항
(6)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7)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권리	제24조
<b>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b>	
(1) 교육에 대한 권리	제28조
(2) 교육의 목표	제29조
(3)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문화권	제30조
(4)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7. 특별한 보호조치	
(1) 난민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	제22조
(2)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	제30조
(3) 착취 상황에 놓인 아동	
①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② 마약과 향정신적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 이용	제33조
③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제34조
④ 매매, 인신매매 및 납치	제35조
⑤ 기타 형태의 착취	제36조
(4) 법에 위반된 아동과 범죄·소년사법의 피해 아동 및 아동 증인	
① 소년사법 행정	제40조
② 자유가 박탈된 아동	제37조 나호 내지 라호
③ 아동에 대한 판결 선고	제37조 가호
④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9조
(5) 무력분쟁 하의 아동과 그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제38조, 제39조

### Ⅲ.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효력 문제

#### 1.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과 국회의 동의 문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

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유엔의 9개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한 8개 국제인권조약을 가입·비준한 당사국이다. 그런데 다른 7개 국제인권조약과 달리,<sup>35)</sup>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sup>36)</sup> 국내 법원에서의 원용 사례를 살피기에 앞서 그 국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

아동권리협약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인지 여부가 우선 문제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가가 동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폭넓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 내용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조약으로 보는 견해,<sup>37)</sup> 국민의 권

35)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78년 11월 14일,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84년 12월 18일,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은 1990년 3월 16일, 고문방지협약은 1994년 12월 15일,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12월 2일,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22년 12월 8일에 각각 가입·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

36)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17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156면;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4면.

37) 입법사항 즉 어떠한 사항이 국회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인지는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적 헌법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며, 국가조직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 및 국가의 중요 정책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권리·의

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보는 견해<sup>38)</sup>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39)</sup>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당해 조약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조약 즉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저촉되어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하거나 국내법의 제정 없이는 조약을 실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보는 견해<sup>40)</sup>가 여기에 해당한다.<sup>41)</sup> 조약 체결·비준권이

---

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국가공동체의 모든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로, 한수웅, 헌법학(제14판), 법문사, 2025, 362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으로 해석하는 견해로, 노기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법과 정책연구」 제23집 제3호, 한국법정정책학회, 2023, 92면.

- 38) 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② 국내법에 저촉되어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하는 사항, ③ 그 이행을 위하여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한다.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5면.
- 39)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조약인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4, 176면.
- 40) 김용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법제」 통권 제244호, 법제처, 1988, 33면; 김부찬,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헌법 제60조 제1항의 개정 및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63면.
- 41) ‘입법사항’을 넓게 해석하면서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구체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조약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여기에 해당한다. 도경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서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고 국회의 동의권 행사는 견제적 성격의 소극적 권한 행사로 보면서,<sup>42)</sup>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정부의 기존 해석 및 관행을 고려한<sup>43)</sup> 입장이라고 하겠다.

아동권리협약은 일련의 아동의 권리를 인정·존중·보장하고 아동을 보호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주체로 한 권리를 직접 규정한 조문도 다수 포함<sup>44)</sup>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폭넓게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게 되는데,<sup>45)</sup><sup>46)</sup> 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한 조약의 효력이 다시 문제된다.<sup>47)</sup> 한편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좁게 해석하는 견해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할 당시에 국내법과 충돌되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 충돌되는 조항은 모두 유보하고<sup>48)</sup> 비준했다는 점에서 유보 조항을 제외한 아동권리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

울국제법연구원, 2013, 106-110면.

- 42) 정인섭, 조약법: 이론과 실행, 박영사, 2023, 553면; 이와 유사하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예외적·부차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김부찬, 앞의 글, 60면.
- 43) 도경옥, 앞의 글, 104-107면; 정인섭, 앞의 책, 577-578면.
- 44)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6조, 제20조 제1항 등
- 45)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6면.
- 46) 국제인권조약이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따르면이라도 같다. 진중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한국법학원, 2019, 513면.
- 47)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4-5면.
- 48) 정부는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할 당시에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에 대한 관계당국의 허가) 및 제40조 제2항 나호(5)(형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규정을 유보했고,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16일에,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에 대하여는 2017년 8월 11일 각각 유보를 철회했다.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sup>49)</sup> 볼 여지가 있다.<sup>50)</sup> 이 경우 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시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헌법상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비동의조약)의 효력 문제는 남는다.

### 3.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문제

아동권리협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 그 비준 당시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헌법상 절차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내 헌법 절차 위반은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sup>51)</sup> 그러나 그러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동의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한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은 무효로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sup>52)</sup> 이와 다른 견해로는 첫째, 법규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sup>53)</sup> 둘째, 그 효력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에 의하여 국제법상 조약체결절차를 거쳐서 성립되고

49) 정인섭, 앞의 책, 583면.

50) 이와 달리, 유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권리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정경수, 앞의 글(각주 87), 171면 참조.

51) 정인섭,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후동의,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2, 17면.

52)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292면; 노기호, 앞의 글, 96면; 도경욱, 앞의 글(각주 6), 99면; 성낙인, 헌법학(제25판), 법문사, 2025, 331면; 이준일, 헌법학강의(제9판), 홍문사, 2025, 183면; 정인섭, 앞의 책, 522면; 한수웅, 앞의 책, 359면; 허영, 한국헌법론(전정21판), 박영사, 2025, 211면.

53) 남복현, 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한양법학」 제23집, 한양법학회, 2008, 207면.

54) 표현상 명확하지 않으나 같은 취지로 이해되는 견해로, 임지봉, 앞의 글, 167면.

공포절차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그 효력이 공식적으로 부인되기 전까지는 일응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sup>55)</sup>가 있다. 그리고 조금 논의의 결을 달리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조약으로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중 기술적·절차적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춘 국제관습법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sup>56)</sup>가 있다.

아동권리협약이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비동의 조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행령 등 법률 하위의 효력만을 지닌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sup>57)</sup>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도 다수설을 비판하며 비동의 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sup>58)</sup>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기존 조약 운영 실태나 국내법 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견해,<sup>59)</sup> 그리고 조

55) 김부찬, 앞의 글, 73면.

56)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6면, 11-12면.

57) 김경재,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유럽헌법연구」 통권 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199면; 김철수, 앞의 책, 291면, 노기호, 앞의 글, 81면; 성낙인, 앞의 책, 328면; 성재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7, 125면; 양건, 헌법강의(제14판), 법문사, 2025, 160-161면; 이준일, 앞의 책, 181면; 임지봉, 앞의 글, 167면;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8판), 집현재, 2025, 169면; 전종익, 앞의 글, 508면; 정인섭, 앞의 책, 517면;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5, 37-39면; 한수웅, 앞의 책, 360면; 허영, 앞의 책, 211면.

58) 다만, 이 견해에 따르면이라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는 국내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한다. 정인섭, 앞의 책, 522면.

약의 국내적 효력을 국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당해 인권조약이 보호하는 권리가 국내법상 헌법적 차원 또는 법률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sup>60)</sup>가 있다.<sup>61)62)63)</sup>

#### 4. 소결

조약의 체결·비준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고,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역시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64)</sup> 정부 내에서는 실무적으로 조약안 심사과정에 법제처가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외교부가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단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며,<sup>65)</sup> 정부는 조약 내용이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하는 사항, 국내법의 제정 없이는 조약을 실시할 수 없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경우만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sup>66)</sup> 정부가 아동권리

59) 정인섭, 앞의 책, 519-537면.

60) 오승진, 앞의 글, 124면.

61) 국제인권규약은 헌법률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철수, 앞의 책, 291-294면 참조.

62)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 대하여는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다른 국제인권법의 경우는 따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명웅, 앞의 글, 185면.

63)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의 연원인 조약규정(특히, 오늘날 인권조약)은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된 조약(행정부협정)은 법률보다 하위에 놓인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 김대순, 앞의 책, 339-340면.

64) 김부찬, 앞의 글, 66면.

65) 김부찬, 앞의 글, 66면; 도경옥, 앞의 글, 98-99면.

협약을 비준할 당시에 국내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3개 조문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준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관행 및 해석에 따라 유보한 3개 조문을 제외한 아동권리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sup>67)</sup>

또한 정부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사전에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검토한 후 국내법의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sup>68)</sup> 이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좁게 해석하는 데 따른 논리적 귀결이며, 이를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 위반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행이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sup>69)</sup> 하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된 조약을, 사후 동의를 통해 하자를 치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sup>70)</sup> 단순히 행정협정과 같이 취급하여 법률보다는 하위의 명령·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sup>71)</sup> 특

66) 도경옥, 앞의 글, 104면; 정인섭, 앞의 책, 577면.

67) 정인섭, 앞의 책, 583면.

68) 도경옥, 앞의 글, 106-108면; 정인섭, 앞의 책, 520-522면

69) 도경옥, 앞의 글, 108-109면.

70) 정인섭, 앞의 책, 556-558면; 다자조약에 관한 국회의 구체적 사후동의의 사례에 관하여는 정인섭, 앞의 글(각주 51), 12-16면.

71)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할 것이고,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상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김부찬, 앞의 글, 67면.

히 아동권리협약과 같이 헌법상 자유와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약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비준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지만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 최소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sup>72)</sup>

#### IV.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

##### 1. 대상 판결의 선정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털’ 웹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의 ‘종합법률정보’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의 검색어 검색 및 ‘케이스노트 프로’ 웹사이트(<https://casenote.kr/>)의 검색어 검색을 통해 판결 이유 중에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된 판결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당사자의 아동권리협약 주장 여부나 원고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언급하거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판단을 명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재확인하여 대상 판결을 선정하였다.<sup>73)74)</sup> 따라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에 근

72) 인권조약의 보장하는 인권이 대부분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서 출발한 점과 우리 헌법의 국제법준종의 원칙을 근거로 국제인권조약이 헌법에 비해 열위가지만 국내 법률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나 국제인권조약의 헌법규범적 성격을 이유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헌법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일반법률 보다는 우위에 두는 견해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국내법상 지위를 인정해야 논리적으로 일관될 것이다. 박찬운, 인권법(제3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24, 330-331면; 류성진,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8면 참조.

거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대상 판결에 포함되었지만, 당사자가 아동권리협약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sup>75)76)</sup>는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상 판결에서 제외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조문을 기술하면서 해당 조문에 포함된 아동권리협약이 실시된 경우<sup>77)</sup>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할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실시한 경우<sup>78)</sup> 인정사실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기술했는데 그

73)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된 판결에 대한 연구에서 비슷한 기준을 제시한 예로, 홍관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83면.

74)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에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2053261 판결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 판단에서 피해자들이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대한 기본권들을 침해당하였다고 기술했는데, 선감학원 사건의 성격 및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대나 부모에 의하여 양육을 받을 권리가 언급된 점에 비추어, “국제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아동권리협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대상 판결에서 제외했다.

75)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6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3. 선고 2017구단678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903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선고 2022구단2009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9844 판결 등.

76)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19면은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합307 판결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전주지방법원의 판단은 없었다.

7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 886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23. 선고 2018누657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전주)2021나1072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616 판결 등.

78)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누47580 판결. 이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한 판결에는 포함시키면서도 아동권리협약의 적용례로 설명하기에 어

근거인 아동권리협약이 함께 실시된 경우<sup>79)</sup>도 아동권리협약 원용 판결로 보기 어려워 대상 판결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모든 판결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수의 판결만 공개하고 있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판결서’<sup>80)</sup> 비실명 처리된 상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sup>81)</sup>에는 판결서 공개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82)</sup>

이렇게 확인한 판결들 중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최초의 판결은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소2582 판결이었고,<sup>83)84)</sup> 2025년 12월말까지 총 49개의 판결이 확인되었다. 이하에서

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글로,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20면.

79)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누50880 판결.

80) 가사사건의 판결서는 열람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정기상·오서현, 앞의 글, 15면, 각주 51 및 52에 기재되어 있는 서울가정법원 2021. 11. 23. 선고 2019드합11692(본소), 2020드합38808(반소) 판결과 서울가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르33242(본소), 2019르33259(반소) 판결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한 원문 확인이 불가능해 대상 판결에서 제외했다.

81) 민사판결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형사판결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82) 판결서가 비공개되어 원문을 확인할 수 없었던 예로,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2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19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합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80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고합30 판결 등.

83) 이혜영, 앞의 글, 212-213면은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첫 판결로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을 언급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판결의 판결 이유에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판결에서 제외했다.

는 이 49개 판결을 대상으로 하되, 지면의 한계상 개개 판결의 세부적인 검토보다는 유형별 정리 및 문제점 분석에 집중하기로 한다.

## 2.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판결의 유형별 정리

아동권리협약의 원용된 법원의 판결은 심급별로 제1심 판결이 31개, 항소심 판결이 17개, 재항고 결정이 1개였고, 사건의 성격상으로는 민사사건 판결이 15개(제1심 14, 항소심 1), 가사사건 결정이 1개(재항고 1), 형사사건 판결이 20개(제1심 9, 항소심 11), 행정사건이 13개(제1심 8, 항소심 5)였다. 같은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포함된 경우도 있고,<sup>85)</sup> 형사사건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사건 판결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sup>86)</sup> 사건 기준으로 본다면 총 44건에 관한 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되었다. 우선 민사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으로 구분하고, 그 틀 내에서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84) 이보다 앞서 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 1월 18일과 19일에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후 같은 달 26일에 채택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1996년 1월 26일에 아동권리위원회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질서 내에서 직접 적용가능하고 법원에 의하여 원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했는데, 당시 제출된 최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심의 당시에 구체적인 판결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CRC/C/15/Add.51), 1996, para. 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3 Addendum: Republic of Korea (CRC/C/8/Add.21), 1994.

85)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2392 판결과 대전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121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202196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2. 15. 선고 2022구단71342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37475 판결.

8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6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판결.

## 가. 민사사건

### (1) 아동학대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친부와 계모가 함께 거주하던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친모가 사망한 아동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와 친모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 책임으로 사망한 아동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관련하여,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를 더욱 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시하기에 앞서,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5조와 함께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에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했다.<sup>87)</sup>

양모의 방임행위로 2008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취학의무 유예 아동으로 분류되는 등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2004년 및 2006년에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단순아동학대나 일반사례로 판정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아동 학대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아동학대신고를 판정하여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 아동양육자의 교육적 방임 여부를 관리·감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적극적·구체적

8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판결.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sup>88)</sup>

## (2) 과거사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이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적이 있던 사람들이거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을 상속한 사람이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6건의 사건에 대한 각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 이후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1991년 대한민국이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실시했다.<sup>89)</sup>

1955년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인 함경남도 산청군에 거주하다 만 13세에 아버지와 함께 육군 첩보부대 소속 공작원들에게 납치되어 가족 및 종전 생활관계와 단절된 채, 육군 첩보부대에서 감시를 받으며 억류생활을 하던 중 무력분쟁 또는 적대행위에 이용되어 침투 공작 활동에 동원되었고, 이후 만 17세에 풀려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 중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나.항<sup>90)</sup>과 「아동의 무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단5098811 판결.

89)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7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8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합40546,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합43088, 2023가합43415(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합46995 판결.

90) ‘제37조 나호’의 오기로 보인다.

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1조 및 제2조를 원용했다.<sup>91)</sup>

(3) 해외입양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2019년 미국으로 해외 입양된 입양아동이 미국 현지 검진 결과 양측 귀의 심각한 청력 상실 진단과 함께 심각한 발달 장애가 우려된다는 소견을 제시받자, 미국인 양부모가 국내 사회복지법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호의무, 지도·감독의무, 사후관리 의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헌법,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3조 (a), 사후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헌법, 입양특례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18조 (b)를 근거로 주장했는데, 법원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것으로서 국내법상 재판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서 법원에 소로써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sup>92)</sup>

1979년 미국으로 대리입양을 통해 IR-4 비자<sup>93)</sup>로 국외입양되었다가 입양절차가 완료된 후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2016년 미국에서 강제추방 판결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된 남성이 입양알선기관인 사회복지법인과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합57515 판결.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53715 판결

93) 미국의 국제입양 비자는 IR-3, IR-4 두 종류가 있었는데, IR-4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채 미국에 입국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로, 미국의 관할 주 법원에서 입양명령을 받아 입양절차가 완료된 후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입양알선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국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득 취득 금지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제20조 라호<sup>94)</sup>가 입양알선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국적취득 확인 및 국적취득 조력 의무, 국외입양을 통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 방지 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협약이라고만 표기하면서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것으로서 국내법상 재판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자체로서 법원에 소로써 권리침해 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sup>95)</sup>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입양알선기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아동권리협약 제21조 (d)<sup>96)</sup>와 함께 제35조를 추가로 원용하였다.<sup>97)</sup>

#### (4) 아동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한 아동에 대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제3자인 아동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아동인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판단하면

94) 아동권리협약 ‘제21조 라호’의 오기로 보인다.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96) 아동권리협약 영문본의 조문 표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97)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2021960 판결.

서, 부정행위 시작 당시 피고가 17세 9개월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한 사실로부터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된 명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인 성인이 정서적·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였던 아동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삼았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동인 피고의 부담부분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sup>98)</sup>

#### (5) 제2차 부양의무자의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친부가 사망한 후 친모가 가출하는 등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모가 손자를 부양한 경우에, 조모가 친모를 상대로 손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부양료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원고(조모)의 ‘제1차 부양의무자’인 피고(친모)에 대한 부양료 상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친권자인 부모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13조, 친족의 직계 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74조 제1호 및 제875조와 함께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 제2문을 원용하여,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고,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sup>99)</sup>

98) 원고는 30,01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아동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4가단70787 판결.

99)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소2582 판결.

(6) 미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사무 처리 비용 상환 청구

사망한 배우자가 전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동에 대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후견인인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후견사무 처리 비용의 상환을 성년이 된 피후견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상환청구금액 중 일부를 불인정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할 필요성과 관련하여, 후견인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민법」 제956조, 제681조와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을 원용했다.<sup>100)</sup>

나. 가사사건

(1) 혼인 외 출생자의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중국 국적의 모 사이에 혼인 외 출생자(여아)가 국내에서 출생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해야 했지만, 외국인인 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갱신이 불허되고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정 등이 있어 당시 국내법에 따른 출생신고 첨부서류를 갖추기 어려웠고, 부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의한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출생증명서에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10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103997 판결.

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어,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5조 제1항과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을 추가로 원용한 다음, 이러한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권 및 아동의 권리는 가족생활의 법률관계 및 그 발생·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규정하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의 “모의 성명·등록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고,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sup>101)</sup>

#### 다. 형사사건

##### (1) 아동학대 관련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은 9건이었는데, 이는 다시 ①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학대, ② 자녀학대 및 살해, ③ 자녀(영아)살해, ④ 자녀살해(동반자살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1)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 (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주임교사 및 5명의 보육교사들이 상습으로 아직 매우 어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동 11명(장애아동 6명, 영아 5명)에 대하여 보육실에서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고, 원장은 이와 같은 주임교사 및 보육교사들의 상습아동학대를 방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4년, 주임교사에게 징역 3년, 5명의 보육교사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이유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애아동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오히려 아동학대범행 및 그 방조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 19조와 제23조를 원용했다.<sup>102)</sup>

## (나) 자녀학대 및 살해

계모가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들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흥기로 상해·폭행하고 학대하며 자살교사까지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계모)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권리를 원용했다.<sup>103)</sup>

102) 인천지방법원 2021. 9. 6. 선고 2021고단1608 판결.

103)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

친부와 계모가 함께 거주하던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친부에게 징역 5년, 계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자,<sup>104)</sup> 계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sup>105)</sup> 제1심 법원은 양형의 이유 중 엄벌의 필요성으로 모든 아동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합의되고 확인된 명제라는 근거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채택과 우리나라의 비준을 실시했고,<sup>106)</sup> 항소심 법원은 아동학대가 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범죄라고 판시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권리를 원용했다.<sup>107)</sup>

친부모인 피고인들이 딸들을 학대하고, 공모하여 주거지에서 4세인 첫째 딸이 있는 가운데 2세인 둘째 딸을 무참히 폭행하여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에 대하여 징역 10년, 친모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법원은 그 양형의 이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헌법 및 「아동복지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및 4대 권리를 원용했다.<sup>108)</sup>

#### (다) 자녀(영아)살해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생후 7개월의 영아가 잠에서 깨

1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67 판결.

105)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1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67 판결.

107)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108)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합180 판결.

칭얼대며 자신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수 회 양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불로 때리고, 몸으로 눌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여 살해한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불리한 정상과 관련하여, 법원이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항상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전문(前文) 중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유념한다는 부분을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문구와 함께 원용했다.<sup>109)</sup>

#### (라) 자녀살해(동반자살시도)

친모가 경제적 상황을 비판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과정에 피해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 안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11살, 6학년)의 목에 멀티탭 선 부분을 감고 줄라 피해아동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아동이 저항한 후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sup>110)</sup>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선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녀살해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19조를 원용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

109) 광주고등법원 2022. 3. 23. 선고 (전주)2021노208, (전주)2021노16(병합), (전주)2021보노4(병합) 판결.

110) 전주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3고합5 판결.

일을 선고했다.<sup>111)</sup>

친모가 경제적 곤궁, 가정불화, 우울증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거주지 아파트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 피해 아동(2세)을 살해한 사건<sup>112)</sup>과 친모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인 딸(9세, 사회적 연령은 약 2세 5개월)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딸을 먼저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주거지에서 다량의 정신과 약을 딸에게 먹여 살해한 사건<sup>113)</sup>에서,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제19조를 원용했다.<sup>114)</sup>

## (2) 아동 대상 성범죄

학원 영어강사가 본인의 영어 강의를 수강하여 알게 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아동을 4회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적으로 학대한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운 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죄질이 무척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34조, 제16조 및 제31조를 원용하면서 법규범의 동향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금지하는 방안에

111) 광주고등법원 2023. 8. 16. 선고 (전주)2023노125 판결.

112)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142 판결.

113)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판결.

114)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1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판결.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고 기술했다.<sup>115)</sup>

피고인이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음악원 여자후배인 피해아동(16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등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성적 학대행위의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성인인 피고인이 9살이나 차이 나는 피해아동을 상대로 준강간 및 2회에 걸친 위력간음을 한 것은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sup>116)</sup> 그 근거를 설시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34조를 원용했다.<sup>117)</sup>

### (3) 아동 대상 마약범죄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포싱 범죄집단에 가입한 다음 그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시음행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계획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국내에서 1명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이 필로폰이 함유된 마약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하고 미성년 피해자들과 부모들의 인적사항 수집에 필요한 설문지의 배송 역할도 담당<sup>118)</sup>한

115) 인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3342 판결.

116) 제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그리고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각 같은 일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합7 판결.

11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노982 판결.

118) 실제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학생 14명 중 9명이 이를 마셨고, 5명에게 심박수 증

사람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 활동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sup>119)</sup>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그 선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33조를 원용하여 우리나라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법부도 그 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sup>120)</sup>

#### (4) 양육비 불이행

2021년 1월 12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개정되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대한 형사판결 중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사례가 4건 있었다.

혼인 중 출산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2014년 4월 22일 이혼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

---

가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 6명에게 협박을 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한 시도는 피해자들이 112신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합386, 538(병합), 549(병합) 판결.

1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합386, 538(병합), 549(병합) 판결.

120) 서울고등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3480, 2024노877(병합) 판결.

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는데, 법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실시하면서, 이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27조를 원용했다.<sup>121)</sup>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이혼 후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sup>122)</sup>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sup>123)</sup> 미성년인 자녀가 3명인 사람이 이혼하면서 성립된 조정에 따른 미성년인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 또 이행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치결정을 받고도 감치결정 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sup>124)</sup>에 대한 각 판결의 양형 이유에

121)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6285 판결.

122)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1909 판결.

123)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73 판결.

124)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

서, 법원은 공통적으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개정 취지를 실시하면서, 이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호 및 제2호를 원용했다.<sup>125)</sup>

#### (5) 소년법 감경 문제

범행시와 원심판결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법원의 판결 선고일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소년이 아니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시에 19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에 19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죄를 범할 당시’로 규정된 「소년법」 제59조와 함께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라고 규정된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1항의 문구를 각주에서 언급했다.<sup>126)</sup>

#### (6) 피고인의 아동 양육 문제를 양형요소로 고려한 사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갓 출산한 아동이 있거나 피고인이 자녀의 주된 양육자인 경우에, 항소심에서 헌법,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면서 피고인의 아동의 안정된

---

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90 판결.

1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1909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73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90 판결.

126)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22 판결.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3건 있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고 제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혼인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다음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딸을 출산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도과된 이후 생후 약 2개월 남짓인 딸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로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이를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근거로 헌법, 「아동복지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9조 제1항을 인용했다.<sup>127)</sup>

보이스피싱 범죄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는데, 최근에 아들을 출산했고 또 임신 중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헌법과 「아동복지법」,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피고인의 아들이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sup>128)</sup>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임대인들로부터 일정 조건 하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127)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430 판결.

128) 춘천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20노124 판결.

하고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의 범죄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딸 2명(13세, 2세)이 주된 양육자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날 권익 및 이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그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4조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4조, 제9조 제1항을 원용했다.<sup>129)</sup>

## 라. 행정사건

### (1)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캄보디아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이 협의 이혼을 한 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체류하다가 출국한 캄보디아 출신의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있는 남편이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5)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부부와 자녀 2명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고,<sup>130)</sup> 이에 항소한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으며,<sup>131)</sup>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특히 자녀 2명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으로부터 부모인 외국인의 사증발급 여부에 관하여 다룰 법률상 이익을 직접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up>132)</sup>

129)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누3293 판결.

130) 서울행정법원 2024. 2. 15. 선고 2022구단71342 판결.

131)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37475 판결.

## (2)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취소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아동이 2023년 7월 14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면서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다음, 고등학교 이하 유학(D-4-3)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원고가 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28조에 따른 차별 없는 모든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근거로 주장한 데 대하여,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28조의 규정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위 규정에서 의하여 당사국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동에 대하여 무조건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sup>132)</sup>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의 가족들(부부, 친생자녀 3명, 입양자녀 2명)이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무사증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부부와 그 친생자녀 3명에 대하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한 반면에 미성년자로 선천성 기형에 따른 중증 장애가 있는 입양자녀 2명에 대하여는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입양자녀 2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한 다음,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자,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을 취소한 제1심 법원의 판결

132) 서울행정법원 2024. 2. 15. 선고 2022구단713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37475 판결.

133)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단63 판결.

유지했다. 법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직계비속’에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에 의한 양자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들도 재외동포법령에서 정한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들 중 하나로 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원용하고, 그 재외동포법령상 ‘직계비속’의 개념을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전제로 한정 해석하여 입양자녀를 친생자녀와 다르게 취급한다면,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실시했다.<sup>134)</sup>

### (3) 강제퇴거명령 취소, 보호명령 취소

중국 국적의 아동(범행 당시 15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모를 방문하기 위해 입국한 후 미성년자로서 방문동거(F-1-11)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향후 5년 내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규정들의 취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당국이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원고의 모 또는 외조부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원고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권리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sup>135)</sup> 이에 원고가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

134)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춘천)2024누1165 판결.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여러 사정들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조를 원용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했다.<sup>136)</sup>

이집트 국적의 아동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하던 중 공장 숙소에 있다가 단속되어 긴급보호, 강제퇴거명령, 보호명령을 받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아동으로서 부모나 보호자도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 중에 공장 숙소에서 단속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고를 국내에 체류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권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모가 있는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처분이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sup>137)</sup>

#### (4)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들인 부부와 그 자녀 2명(3세, 1세)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되자, 자신들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했다가

135)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2392 판결.

136) 대전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12149 판결.

137) 보호명령은 현재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에 따라 취소하고, 강제퇴거명령 취소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19구단6240 판결.

제1심에서 기각된 후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한 면접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난민법」과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2항,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자녀들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했다.<sup>138)</sup>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란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아동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는, 원고가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자신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아동권리협약 제22조, 제28조로부터 곧바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다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권리를 부여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sup>139)</sup>

에티오피아 국적으로 오모로족인 부부와 그 자녀인 아동 1명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에티오피아 정부는 오모로족의 인권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오모로족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을 박해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와 같은 정당의 일반회원 또는 지지자로 활동하여 귀국할 경우 본국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하고, 아동인 자녀는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자,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sup>140)</sup>한 후 항소한 사건

138)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598 판결.

139)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단11500 판결.

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들의 본국 강제 송환을 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후 처할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sup>141)</sup>

#### (5)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불가처분 취소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프랑스 및 벨기에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프랑스 행정기관에 출생신고한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으로 발급된(종로구청장이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르게 발급)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프랑스 출생증명서상 로마자성명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다음,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구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이 문제 되었는데, 법원은 취업이나 유학뿐 아니라 국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등 국외에서 사회생활상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로마자성명 변경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피고(외교부장관)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0조, 제34조와 함께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규정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중대한 공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했다.<sup>142)</sup>

140) 서울행정법원 2024. 7. 25. 선고 2024구단4780 판결.

141)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55978 판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부모가 최초로 신청하면서 표기한 로마자성명과 다르게 여권이 발급되자(수원시장이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르게 발급), 해당 부분을 변경해주도록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변경 불가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해당 변경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자신의 성명을 여권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이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이라서 행정청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실시하고, 나아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원용하면서, 아직 나이 어린 아동인 원고가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인한 사회생활상 불편과 어려움, 정신적 혼란 등을 감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달리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사유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하고 중대한 공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한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했다.<sup>143)</sup>

#### (6)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중지처분 취소

보조금 부적정 사용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지역아동센터가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명령 및 보조금 중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는 보조금 중지처분이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중지처분은 장기간 동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온 원고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처분이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고 볼만한 아

142)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81328 판결.

143)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83301 판결.

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보조금 중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sup>144)</sup>

마. 소결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아동권리협약이 폭넓게 원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민사사건 중 과거사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판결과 형사사건 중 아동학대 관련 판결 및 양육비 불이행 관련 판결에서 다수의 원용 판결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판결을 한 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9개 판결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방법원 6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4개 판결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각 판결에서 원용된 아동권리협약의 조문들로부터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아동권리협약의 주제별 그룹 체계를 활용하여 판결 이유에 명시된 조문들을 정리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가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었고, 그 다음으로 학대 및 방임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19조가 많이 원용되었다.

구분	조문	원용된 판결 수
1. 일반 원칙		
(1) 차별금지	제2조	2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3조	8
(4)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제12조	1

144) 다만, 보조금 중지처분 중 국가 교부 보조금이 아닌 지방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침익적 처분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구합727 판결.

구분	조문	원용된 판결 수
<b>2. 시민적 권리 및 자유</b>		
(1) 출생등록, 성명 및 국적	제7조	3
(2) 신분의 보존	제8조	2
(6)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	제16조	1
<b>3. 아동에 대한 폭력</b>		
(1) 학대 및 방임	제19조	7
(3)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제34조	2
<b>4.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b>		
(2) 부모의 공동책임, 부모 지원 및 보육서비스 제공	제18조	1
(3)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9조	4
(4) 가족 재결합	제10조	1
(5) 아동양육비의 회수	제27조 제4항	1
(8) 국내 및 국외 입양	제21조	2 <sup>145)</sup>
<b>5. 장애, 기본적인 건강 및 복지</b>		
(1) 장애아동의 존엄성, 자립 및 적극적 사회참여	제23조	1
(4) 약물 남용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제33조	1
(6)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	제27조 제1항 내지 제3항	4
<b>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b>		
(1) 교육에 대한 권리	제28조	2
(4)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1
<b>7. 특별한 보호조치</b>		
(1) 난민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	제22조	2
(3) 착취 상황에 놓인 아동		
④ 매매, 인신매매 및 납치	제35조	1
(4) 법에 위반된 아동과 범죄·소년사범의 피해 아동 및 아동 증인		
② 자유가 박탈된 아동	제37조 나호 내지 라호	1
③ 아동에 대한 판결 선고	제37조 가호	1

### 3.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판결에서 확인된 문제점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판결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일부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으로 적용되는 만큼, 법의 적용을 담당하는 법원에서는 법률을 표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가. 아동권리협약의 부정확한 인용

##### (1) 아동권리협약의 명칭을 약칭으로만 표기한 사례

아동권리협약의 국문조약명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므로, 법률을 표기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식 국문조약명을 표기한 다음 약칭을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sup>146)</sup> 유엔 아동권리협약,<sup>147)</sup> UN 아동권리협약,<sup>148)</sup> 아동권리협약<sup>149)</sup>과 같은 약칭으로만 표기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1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은 제20조 라호로 표기 하였으나, 제21조 라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제21조로 분류했다.

1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합26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 55371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구합72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5. 24. 선고 2024가단70787 판결.

147)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

148) 인천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3342 판결.

149)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1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55978 판결.

(2)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가입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

일부 다른 국제인권조약과 달리,<sup>150)</sup>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을 한 후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sup>151)</sup> 국제법적으로 비준(ratification)과 가입(accession)<sup>152)</sup>은 구분하여 사용되므로, 이를 표기하고자 한다면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비준한’,<sup>153)</sup> ‘우리나라가 가입한’,<sup>154)</sup>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sup>155)</sup>과 같은 문구는 정확하지 않다.

(3) 발효일이나 우리나라가 비준한 일자를 잘못 표기한 사례

아동권리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된 것은 1990년 9월 2일이었고,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한 것은 1991년 11월 20일이었으며, 우리나라에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것은 1991년 12월 20일이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날을 ‘1991. 12. 20.’로 표기하거나<sup>156)</sup> 아동권리협약이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행한 날을 ‘1990. 10. 2.’로 표기한 것<sup>157)</sup>은 정확하지 않다.

150) 서명 없이 ‘가입서’를 기탁한 예로, 자유권규약,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151) 서명 후 ‘비준서’를 기탁한 예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152) 가입(accession)이란 이미 조약에 대한 협의가 끝났거나 서명을 마친 이후 추가로 당사국이 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정인섭, 앞의 책, 88면.

153)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고단6285 판결.

154) 광주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9노22 판결.

1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103997 판결.

156)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598 판결.

15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3고단1909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73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6. 18.

#### (4) 아동권리협약의 조문 표기가 부정확한 사례

국제입양에 있어서 부당한 재정적 이익 취득 방지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21조 라호를 제20조 라호로 잘못 표기한 사례가 있었다.<sup>158)</sup> 또한 아동권리협약은 국내 법률과 달리, 상하위 조문 체계가 ‘제1조, 1. 가.’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제3조 제1호’,<sup>159)</sup> ‘제27조 제1호’<sup>160)</sup>와 같이 표기할 것이 아니라, 제3조 제1항, 제27조 제1항과 같이 법률과 동일하게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국문본은 ‘가. 나.’로, 영문본은 ‘(a), (b)’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 중 영문본 표기를 사용한 예도 있었는데,<sup>161)</sup> 국제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제54조 제1문<sup>162)</sup>에 따라 국문본이 정본으로 인정될 수 없겠지만, 국내적으로는 국문본을 우선하여 국무회의 심의<sup>163)</sup> 및 관보 게재<sup>164)</sup> 절차를 마쳤으므로, 법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함에 있어서는 국문본의 표기를 기준으로 원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용하는 아동권리협약 조문의 내용이 그 중 특정 항에 국한된 것이라면 항까지 표기해 특정해 줄 필요가 있다.<sup>165)</sup><sup>166)</sup>

---

선고 2025고단90 판결.

1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15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103997 판결.

16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90 판결.

1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가합5537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나2021960 판결.

162)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163) 총무처, 국무회의의안처리전(의안번호 제644호), 1991.

164)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2002호, 1991. 12. 23.자, 4-29면.

165)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을 제7조, 제8조, 제9조로만 표기한 예로,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1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판결.

나.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면서 구체적인 조문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

아동권리협약은 앞서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및 체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부 중 제1조,<sup>167)</sup> 제4조, 제41조를 제외하고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38개 조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면서도는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문을 명확히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으나, 여러 판결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표기하지 않은 채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sup>168)169)170)</sup> 원고들의 아동권리협약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단 대상이 된 아동권리협약의 조문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sup>171)</sup>도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다. 보다 직접적인 규정에 대한 원용이 누락된 사례

아동권리협약의 원용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별 권리 영역에 관한 조문이 있다면 일반원칙에 관

---

166)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2개의 판결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조문을 원용하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81328 판결은 아동권협약 제3조만 표기한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83301 판결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 중 제1항, 제2항을 특정하여 표기했다.

167)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아동권리협약 제1조를 명시하지 않은 예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5. 24. 선고 2024가단70787 판결.

1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합5537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169) 4대 원칙에 해당하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

170)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데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판결.

171) 서울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2024누55978 판결.

한 조문보다 개별 권리 영역에 대한 조문의 원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 사례의 경우에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이나 4대 권리를 원용<sup>172)</sup>하기에 앞서, 모든 형태의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사와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9조를 원용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미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와 관련해서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호<sup>173)</sup>보다 제18조 제1항이 더 직접적이며, 강제퇴거명령 전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라면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sup>174)</sup>하는 것보다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검토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다.

#### 라. 아동권리협약상 조문의 원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원용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당해 판결에 적절하게 원용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사례도 있었다.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도 협약상 권리가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실시했으나,<sup>175)</sup> 해당 내용은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사건과 같이 아동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원용으로 보인다. 또한 재외동포의 친생

172)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

173) ‘제3조 제1항’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103997 판결.

174) 수원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19구단6240 판결.

175)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2392 판결.

자녀와 입양자녀 사이의 체류자격 부여의 차이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이를 ‘부모의 민족적, 인종적 출신에 따라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았으나,<sup>176)</sup> 부모의 출신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아니라, 아동 본인의 입양자녀라는 ‘신분에 따라 아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적용이라고 하겠다.

마. 국내 법령의 조문과 아동권리협약의 조문을 함께 원용하면서,  
조문상의 차이를 간과한 사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이행 순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913조와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 제2문을 원용했는데, 해당 판결 당시 「민법」은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따른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의 사람과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했으나, 법원은 판결 이유 중 각주 1)에 아동권리협약 제1조를 표기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sup>177)</sup>

#### 4.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판결에서 확인된 긍정적 측면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들에 앞서 살펴본 문제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여러 긍정적 측면들도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들로부터 확인되었다.

가. 아동권리협약 국문본의 정확한 제시 사례

아동권리협약 중 관련 조문의 국문본을 각주<sup>178)</sup>나 표<sup>179)</sup>로 정확

176)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춘천)2024누1165 판결.

177)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소2582 판결.

하게 제시하는 판례와 함께 ‘관련 법령’ 혹은 ‘관계 법령’ 목차에 정식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제시한 판결들도 확인되었다.<sup>180)</sup> 특히 아동권리협약과 국내 법령을 함께 제시할 때에 그 배치 순서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을 가장 앞부분에 기재한 것<sup>181)</sup>은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및 위상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두고 상징적으로 그와 같은 배치한 것으로 이해된다.

#### 나.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시한 사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극단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이 위헌·무효인 조약이라는 견해도 가능한데, 대법원에서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을 원용하면서 그러한 아동의 권리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sup>182)</sup> 한 이상 위헌·무효라는 견해는 더 이상 지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아동권리협약이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한 하급심 판결이 등장했다. 바로 아동권리협약 앞에 “국내에서 1991. 12. 20. 발효되어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사례<sup>183)</sup>가 그것이다.

178)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단11500 판결: 아동권리협약 제22조, 제28조.

179)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춘천)2024누1165 판결: 아동권리협약 제2조.

1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단5098811 판결은 ‘관련 법령’에 표로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시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단63 판결은 ‘관계 법령’에 대한 [별지]로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4조, 제28조를 제시했다.

181)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구단63 판결.

182)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183)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32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합5751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단5098811 판결.

#### 다. 국내법의 보충·보완으로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한 사례

국내법의 규정 내용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보충·보완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인 부모와 친족의 부양의무이행 순위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법적 쟁점인 부양의무 이행 순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1항 제2문을 적극적으로 원용했다.<sup>184)</sup> 또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라는 공익을 내세우는 반대 주장을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는 논거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를 끌어들었다.<sup>185)</sup> 보이스피싱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중국 국적 아동의 강제퇴거에 관한 판결에서,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과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보장한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의 일반적 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4조로 판단 기준을 보완했다.<sup>186)</sup>

#### 라. 아동권리협약 위반을 인정한 사례

절차적 권리 보장과 차별에 관하여는 더 적극적으로 아동권리협약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난민불인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아

184)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가소2582 판결.

185) 서울행정법원 2021. 8. 20. 선고 2020구합8132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2. 6. 선고 2023구합83301 판결.

186) 대전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12149 판결.

동에 대한 면접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동권리협약 제 12조 제2항, 제2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sup>187)</sup> 친생자녀와 입양자녀 사이의 체류자격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는 아동권리협약 제2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sup>188)</sup>

마.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최초로 원용한 사례

비록 직접적인 위반의 근거로 판단된 것은 아니었지만, 법원의 판결에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방지와 관련된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나호와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최초로 원용된 사례<sup>189)</sup>가 확인된 점도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 V. 맺는 말

이상과 같이 2013년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이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확인 가능한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한 판결들에서 원용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함께 긍정적 측면을 확인했다.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판결들은 단순히 그 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권리협약의 대상 조문을 국문본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거나, 아동권리협약이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거나, 개별 사건에서 아동

187)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5598 판결.

188) 서울고등법원 2025. 8. 13. 선고 (춘천)2024누1165 판결.

1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합57515 판결.

권리협약 위반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판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아동권리협약이 일부 판결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정 재판규범으로 역할을 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구체적 사건에서 재판규범으로 원용하는 가운데 확인된 법·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입법이나 행정 영역에서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sup>190)</sup> 이러한 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국내 이행 법률에 해당하는 아동기본법<sup>191)</sup>의 제정이 시급해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이 원용된 판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청소년인 원고를 위하여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판결 이유에 붙인 판결문<sup>192)</sup>을 보게 되었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려 깊은 존중의 마음이 전해져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감동을 받았다. 굳이 이 판결과 유사한 방식은 아니더라도, 향후 국내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아동 관련 판결에서 더 다양한 아동권리협약의 조문들을 정확한 인용 및 해석과 함께 원용할 것을 기대해 본다.

190) 국제인권법의 국내 이행 관련 논의가 사법부의 역할에 국한되기보다는 입법·행정부를 포함한 정치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이행 제도 설계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송지우·백범석, 법원을 넘어서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21, 152면.

191) 제22대 국회에는 2024년 7월 3일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과 2025년 5월 2일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192)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한 이유로 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제12조도 친절하게 언급했다.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4112 판결.

##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해설집 「아동의 권리」, 2005.
- 김대순, 국제법론(제22판), 삼영사, 2025.
-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 박찬운, 인권법(제3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24.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국내 사법판단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용, 2017.
- 성낙인, 헌법학(제25판), 법문사, 2025.
- 양건, 헌법강의(제14판), 법문사, 2025.
- 이준일, 헌법학강의(제9판), 홍문사, 2025.
- 이혜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구원, 2020.
- 전광석, 한국헌법론(제18판), 집현재, 2025.
- 정인섭, 조약법: 이론과 실행, 박영사, 2023.
- 한수웅, 헌법학(제14판), 법문사, 2025.
- 허영, 한국헌법론(전정21판), 박영사, 2025.
-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12002호, 1991. 12. 23.자.
- 총무처, 국무회의의안처리전(의안번호 제644호), 1991.
- 김경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유럽헌법연구」 통권 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 김민진·조행난·지영환, 한국법원의 인권규정의 적용과 발전방향: 국제인권 조약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6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 김부찬,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에 관한 고찰 -헌법 제60조 제1항의 개정 및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 「국제법학회 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7.
- 남복현, 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한양법학」 제23집, 한양법학회, 2008.

- 노기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 「법과 정책연구」 제23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23.
- 도경욱,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 류성진,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7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박향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유형화와 이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 제2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 성재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 제6조 1항 해석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2017.
- 송지우·백범석, 법원을 넘어서 -국제인권법의 효과적 국내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21.
- 오승진,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11.
-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통권 제83호, 한국법학원, 2005.
- 이양희·김상원, 국제아동인권규범의 이행 -아동권리협약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5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이영호·문영희, UN 아동권리협약의 변천과 한국의 이행 성과와 과제, 「비교교육연구」 제26권 제6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 이혜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20.
-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
-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2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4.
-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한국

- 법학원, 2019.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17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0.
- 정기상·오서현,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법제」 통권 제697호, 법제처, 2022.
-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5.
- \_\_\_\_\_,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사후동의, 「서울국제법연구」 제9권 제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2.
- 한봉희, 아동의 권리조약과 가족법, 「가족법연구」 제6호, 한국가족법학회, 1992.
- 홍관표,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 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법학논총」 제32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_\_\_\_\_, 국제인권조약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2015.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2007.
- Sharon Detrick,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9.
- UNICEF, First Call for Children, 1990.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reat-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 (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C/58/Rev.3), 2015.
- UN, Compilation of guidelines on the form and content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RI/GEN/2/Rev.6), 2009.

\_\_\_\_\_, Common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  
Republic of Korea (HRI/CORE/KOR/2022), 2022.

UN General Assembly, Forty-fourth session General Assembly Provisional  
Verbatim Record of the Sixty-first Meeting (A/22/PV.61), 1989.

\_\_\_\_\_, Strengthening and enhancing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RES/68/268), 2014.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Abstract>

## **A Study of Court Rulings Invok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ong, Kwan-pyo\*

After World War I, the League of Nations adopted the Geneva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24. After World War II, the United Nations continued its efforts to establish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need for particular care for children 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1959,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se efforts finally bore fruit on October 20, 1989, when the UN General Assembly unanimously adopt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The conditions for entry into force of the CRC were met with unprecedented speed, and it has now become the most univers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with 196 countries, excluding the United States, becoming parties to it.

On October 20, 1991,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UN's adoption of the CRC, the Republic of Korea deposited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with the UN Secretary-General. The CRC entered into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20 of that same year as Treaty No. 1072. However, unlike with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obtain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when ratifying the CRC. Therefore, its domestic legal effect is debatable.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RC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legal force as domestic law.

---

\* Professor/Lawye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 a state party to the CRC, the Republic of Korea is bound by it and must implement it in good faith. In particular, Article 4 of the CRC stipulates that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RC. Such domestic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by States Parties include judicial measures, such as court rulings. Whether the CRC is actually invoked in court rulings plays a crucial role in its domestic implementation.

Since 2013, numerous domestic court rulings have invoked the CRC. In this paper, I first categorize these rulings as civil, family, criminal, or administrative cases. Within this framework, I classify cases by the type to identify those in which the courts invoked the CRC.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identified problems and positive aspects of rulings that invoked the CRC, I highlight points that the courts should bear in mind when invoking the CRC more actively in the future.

**Key Words** : child, human right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court ruling, domestic implementation